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6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정지숙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11년 6월 3일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1년 6월 3일

발 의 자 : 정지숙 의원

최병윤·김양희·김영주
박종성·유완백·임현경의원

1. 개정이유

- 2005년에 제정된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는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충청북도 여성들의 발전에 기여하여왔으나, 저출산·고령화 현상, 일·가정 양립 환경의 변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조례명을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하여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성주류화 패러다임을 반영하게 함.
- 총칙을 보강하여 조례의 지향점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간결하게 다듬고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의 변경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정의의 추가와 보완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살림.

다. 총칙의 보완

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여 평등한 가족형성을 꾀하고, 제5조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의를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새롭게 정의하고, 또한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여성정책 기본조례로서 성격을 분명히 함.

라. 성인지예산 제도의 적용

성차별의 개선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조문을 추가함.

마. 직제개편에 따른 여성정책 주관 부서 명칭의 변경
여성가족과 → 여성정책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재정법」,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함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1.5.13~6.2(제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충청북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법”을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1호와 같은 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관련법령”이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
6.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유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4. 제5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7조의 제목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를 “(성인지적 분석·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 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의 수립·시행
 - 나. 예산의 편성과 결산

제8조의 제목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을 “(여성관련 실태조사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도지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북한이탈여성, 결혼이민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원, 가해

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을 “(여성관련 시설·기관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시설과 여성정책 분석·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 각 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여성정책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제25조의 제목 “(구성 및 임기)”를 “(구성과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가족과 주무사무관”을 “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4조제7호 중 “요보호여성”을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여성발전을”을 “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여성가족과 주무사무관”을 “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u>여성발전</u> 기본조례	충청북도 <u>여성정책</u> 기본조례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 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여성관련법령</u>”이란 <u>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u></p> <p>2.~3. (생략)</p> <p>4. “<u>소속기관</u>”이라 함은 「<u>지방자치법</u>」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p> <p>5.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 기본법</u>」과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현행과 같음)</p> <p>1. “<u>여성관련 법령</u>”이란 <u>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평등의 촉진, 양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u></p> <p>2.~3. (현행과 같음)</p> <p>4. “<u>소속기관</u>”이란 「<u>지방자치법</u>」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의회사무처를 말한다.</p> <p>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180 309 360 347"><신 설></p> <p data-bbox="180 651 799 981">제3조(도의 책무) 도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 data-bbox="180 999 360 1037"><신 설></p> <p data-bbox="180 1344 799 1731">제5조(적극적 조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data-bbox="812 309 1436 580">6.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평등의 촉진, 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p> <p data-bbox="812 651 1436 869">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 data-bbox="812 999 1436 1270">② 도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유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 data-bbox="812 1344 1436 1789">제5조(적극적 조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과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p> <p>① (생략)</p> <p>1. (생략)</p> <p>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p> <p>가. 양성평등의 촉진</p> <p>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p> <p>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p> <p>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p> <p>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지원</p> <p>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p> <p>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p> <p>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과 지원</p> <p>마. 한 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p> <p>바.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p> <p>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p> <p>5. 여성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p>	<p>제6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p> <p>가.~다. (삭제)</p> <p>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p> <p>가.~바. (삭제)</p> <p>4. 제5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p> <p>5.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p>
<p>② (생략)</p> <p>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p> <p>① (생략)</p> <p>② 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성인지적 분석·평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81 309 360 344"><신설></p> <p data-bbox="181 481 338 524">③ (생략)</p> <p data-bbox="181 595 715 638">제8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p> <p data-bbox="181 651 399 694">①~② (생략)</p> <p data-bbox="181 766 600 808">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p> <p data-bbox="181 822 338 864">① (생략)</p> <p data-bbox="181 878 794 1155">② <u>도지사는 저소득 모부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u></p> <p data-bbox="181 1169 338 1211">③ (생략)</p> <p data-bbox="181 1283 756 1326">제17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p> <p data-bbox="181 1339 338 1382"><신설></p>	<p data-bbox="813 309 1436 405">가. <u>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의 수립·시행</u></p> <p data-bbox="813 418 1219 461">나. <u>예산의 편성과 결산</u></p> <p data-bbox="813 474 1101 517">③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13 589 1308 631">제8조(여성관련 실태조사 등)</p> <p data-bbox="813 645 1161 687">①~②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13 759 1232 801">제15조(여성의 복지증진)</p> <p data-bbox="813 815 1101 857">①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13 871 1436 1149">② <u>도지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북한이탈여성, 결혼이민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13 1162 1101 1205">③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13 1276 1430 1319">제17조(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p> <p data-bbox="813 1332 1436 1554">① <u>도지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13 1568 1436 1789">② <u>도지사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자활지원,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p>
<p>제22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p> <p>①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2조(여성관련 시설·기관의 설치·운영)</p> <p>①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시설과 여성정책 분석·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한다.</p>	<p>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p>

현행	개정안
<p>1. <u>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2.~5. (생략) 6. <u>기타</u> 여성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제25조(구성 및 임기) ①~④ (생략)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여성가족과 주무사무관</u>이 된다.</p> <p>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생략) 7. <u>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u> 8. 기타 <u>여성발전을 위하여</u>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3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u>문화여성환경국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여성가족과 주무사무관</u>으로 한다. ② (생략)</p>	<p>1. <u>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2.~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여성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p> <p>제25조(구성과 임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u>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u>이 된다.</p> <p>제3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현행과 같음) 7. <u>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u> 8. 기타 <u>성평등과 여성권의 향상을 위하여</u>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3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u>문화여성환경국장</u>으로, 기금출납원은 <u>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u>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발취

□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관

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 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
2.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
4.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
5.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